

[사 건 명] 행심 2017 - 67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 5일(보호자동반
특별교육 1일)』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고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인용하여 『학교에서의 봉사
2일(10시간)』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10.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5일(보호자동반 특별교육
1일)』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은 ○○고등학교 학생으로, 2017. 9.~10.경 발생한 같은 학교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하여, 2017. 10. 2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함)가 개최되어, 그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특별교육 이수 5일(보호자 동반 특별교육 1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통보받고, 2017. 11. 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교문 앞에서 피해학생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피해학생이 몇몇 학생들을 지목하여 과거 서로 친했던 시기에 장난쳤던 일을 지속적인 학교폭력으로 몰아 가해자로서 처분을 받게 되어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피해학생에게 “돼지, 식초” 라고 놀리지 않았고 학교 측에서 피해학생의 말만 듣고 가해자 처분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피해학생으로부터 폭행 당한 사건이 페이스북에 공개되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학교 측에서 임시방편으로 층간이동도 막고 있어, 주위 시선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피해학생을 놀린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SNS에 피해학생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게재한 것에 연루된 점, 폭행을 당한 후 친구들과 나눈 대화 등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학폭위에서 판단하여 처분 조치하였다.

나. 사건 이후 추석연휴와 2주간의 시간을 주었지만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갈등이 깊어져 화해의 정도 및 반성의 정도는 낮다 판단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학폭위 당시 출석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왔지만, 청구인에게 잘못을 깨닫고 기회를 주고자 한 단계 낮은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하였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처분근거 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2.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증거자료 및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구술심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7. 9. 28. △△△은 ■■■이 빌린 돈을 갚으라며 욕하는 것에 화가나 돈을 주며 ■■■의 뺨을 한 대 때림. ■■■을 왜 때리느냐며 피해학생이 다툼에 개입. 이때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말투와 행동에 웃었고, 청구인과 피해학생 간의 언쟁이 발생. 이후 피해학생이 교문 앞에서 청구인의 얼굴을 몇 차례 가격함.

나. 이후 청구인이 피해학생으로부터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청구인의 친구 ▣▣고 ○○○이 피해학생을 찾아가 따졌고, 피해학생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학생의 코뼈가 부러 짐. 당시 현장에는 청구인이 있었음.

다. 청구인은 페이스북에 “어머니 친구가 □□이가 더 까블면 물어버린다는데”, “삼촌 친구들 모아서 두드려 패준대”라고 글을 올림.

라. 청구인, △△△, ■■■는 ◎대전(◎◎고 대신 전해드림)이라는 페이스북에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진 사람이 피해학생을 놀리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로 하고, 이에 따라 진 사람이 그러한 글을 올림.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

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동법 제3조에 따르면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청구인이 페이스북에 “어머니 친구가 □□이가 더 까블면 물어버린다는데”, “삼촌 친구들 모아서 뚜드려 패준대”라고 글을 올리고, △△△, ■■■와 함께 ◎대전(◎◎고 대신 전해드림)이라는 페이스북에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진 사람이 피해학생을 놀리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로 한 행위는, 피해학생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에 해당하고,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므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기준에 따라 심각성 높음(3점), 지속성 없음(0점), 고의성 낮음(1점), 반성정도 보통(2점), 화해정도 낮음(3점)으로 판단하였고, 합계 10점으로 산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6호 출석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에게 잘못을 깨닫고 기회를 주고자 한 단계 낮은 5호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하였다.

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기준 합산 점수를 10점으로 계산하였으나, 합산하면 9점에 해당하고, 이는 4호 사회봉사 처분에 해당하는 점수이다. 학폭위에서 청구인과 피해학생 모두 한 단계 낮은 처분을 한 것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4호 사회봉사 처분보다 한 단계 낮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합이 타당하다. 학교 봉사 시간은, 청구인이 피해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한 점(가해학생이자 피해학생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일(10시간)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징계양정과 관련해서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인 특별교육이수 5일(보호자 동반 특별교육 1일)을 감경하여, 학교에서의 봉사 2일(10시간)으로 처분한다.

V. 결 론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학교에서의 봉사 2일(10시간)).